2022 경기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

- ※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(해당 기관)에 있음
- ※ 사업신청단계에서는 총 지원금액과 간략 예산 내역을 공모신청서 내에 작성하여 제출
 - -->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산출계획을 작성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하여야 하며,

센터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

- 모든 예산은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·관리·정산 필수
 - ⇒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전자(세금)계산서, 보조금전용카드로 지출 가능하여야 함
 - ⇒ 일반공모- e나라도움 예치형(신용카드 사용)
- 예술교육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

(운영비-일반수용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)

- 회의 운영비는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가능하되, 회의록 제출(일시, 장소, 내용, 참여자) ※ 식·음료 사진증빙은 필요 없음
- 사업참여인력 수업 인건비는 **회차당 3시간 편성**(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)
 - ※ 외부활동 등으로 회차당 3시간 초과 편성 시 별도 계획서 제출 및 센터 사전 협의 필수(최소 2주 전)
- 기획자, 주강사, 보조강사,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(직계비존속)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
 - 예시1)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입 ⇒ 불가
 - 예시2) 특강강사 박OO가 개발한 교육키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박OO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 키트 일괄 구입 ⇒ 불가
 - 예시3) 기획자 이O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참여자 다과 구입 ⇒ 불가
- 초빙(특강)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, 전체 회차 중 10% 내 편성 가능
 - 예시) 총 20회차 운영시 특강강사 2회차까지 편성 가능(3회 이상 편성 불가)
- 초빙(특강)강사비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
- 예시)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(250,000x2시간)+(250,000*50%x1시간)=375,000원 ※ 단, 기타소득 8.8% (33,000원) 공제 후 실지급액은 342,000원
- 업무추진비(강사 회의식비, 참여자 다과비)의 합은 **총 예산의 10% 이하** 편성 가능
- 여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증빙서류(영수증, 출장보고서)로 지출 가능

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편성불가 항목

※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(해당 기관)에 있음

인정불가 경비	세부 내역
자산취득성 물품	○ 가구(책상, 의자 등) ○ 전자기기(마이크, 카메라, PC, 프린터 등)
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·기관의 상설운영 경비	○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○ <u>프로그램교육공간이 아닌</u> 운영사무실 임대료, 시설비, 수선비 ※ 단, 지역특성화 기획공모(거점지원)은 센터와 협의 하에 공간 임대료 편성 가능 ○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시혜성 물품	○ 행사 관련 상품권, 상금, 사례금 지급 금지 예) 문화상품권 등
과도한 식비, 다과비	 매회 식사비, 매회 회의비, 단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, 회의비의 경우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만 편성하고,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함 ※ 특히, 코로나19 심각단계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하여, 해당 기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간식제공 금지, 식음료비 지출과 회의비 지급 자제권고
주류 및 유흥성 지출	○ 주류 구입 불가하고 유흥성 업소에 집행 불가함 ○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(심야시간) 지출 불가 ※ 회의식비 지출 시, 일시,장소, 정확한 참여인원,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
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	○ 계획서내에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(강사비, 기획자 인건비 등) 지급 불가 ○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(원고비 등) ○ 인건비 중복·교차 지급 불가 예)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,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
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	○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 (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)
기타 사항	○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○ e-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○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필수

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예산 편성가능 여부

목	세	세세목	산출기초						
		사업참여인력 인건비	문화예술 교육사 인건비	-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책정					
				구분	구분 내 용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	강사/ 초빙강사 초빙 강사료 (연수 등)	강사비	○ 주강사: 시간당 50,000원 / 보조강사: 시간당 30,000원 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캠프,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 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 - 경 전체 - 경				
				지사료 1등급* 250,000/시간 2등급* 150,000/시간 3등급* 150,000/시간 3등급* 100,000/시간 ** 1등급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/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					

목	세	세세목	산 출 기 초						
			수업	○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인력 비용 ○ 주강사 · 보조강사 : 회당 70,000원					
			준비비	- 전체 교육회차의 총 30% 이내에서 책정 가능					
				※ 교육 프로그램 준비 :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회의, 교보재 제작 등 ○ 각종행사 진행 사례비					
					구분	지급기준	단가		
						A급	500,000원		
				주제발표자		B급	400,000원		
						C급	300,000원		
						A급	300,000원		
					사회자	B급	200,000원		
						C급	100,000원		
						A급	300,000원		
				지	정토론자	B급	200,000원		
				ı L		C급	100,000원		
			세미나/포럼	※ 등급 적용기준					
		등	등 행사 진행 전문가사례비	등급 해당자					
				A급	• 대학원 및 대학(교) 부교수 이상 •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• 언론기관·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• 단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• 변호사, 변리사, 의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 •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				
				B급	사무관급 이상 언론기관·전문 문화예술 분이 기타 위 각 형	연구기관의 중견 간부 :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? 목에 준하는 인사			
				C급	•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'A급', 'B급'에				

목	세	세세목	산출기초						
				ā	해당되지 않는	기타 인사			
			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고		
			회의수당 및	자문회의 참석수당	심층	200,000원	.화당(2사만기준)		
					일반 좌담회	100,000원 100,000원	 % 2사단 초과 시 50% 적용 증액 1일 최대 4사단까지 적용가능		
			자문료	○ 회의수당 및 자단	· · · · ·	,			
				- 회의 참석자 중		사례비 지급 북가			
				- 외부 전문가 자					
			 ○ 강사의 교	통비 지급 여부는 기관의 선택					
			○ 강사 교통비 산출기준은 선정기관의 기준에 준함						
			※ 기준이 없을 경우 경기문화재단 기준에 따름						
		강사 교통비	※ 단, 강사	거주지와 교육장소	간의 왕복거리기	가 왕복 30km 미만 2	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,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		
				내에서는 지급할 수					
			☞ <u>기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</u>						
			※ 서울-세수 	· 등 설노· 양공비 등	실비 시급은 영	수승으로 승명하여 시			
			○ 강사 교통 ※ 기준이 입 ※ 단, 강사 사군구 □ ☞ 기급적 :	비 산출기준은 선정기 없을 경우 경기문화지 거주지와 교육장소 내에서는 지급할 수	기관의 기준에 전 배단 기준에 따름 간의 왕복거리기 없음 사를 활용하여 여	용 가 왕복 30km 미만 7 사신의 효율적 사용 도	<u>모할 것</u>		

목	세	세세목	산출기초					
<u> </u>		교육재료비	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					
		홍보비/인쇄비	리플렛 포스터, 현수막 등					
		기타운영비	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					
		회계검사수수료	(필수) 회계검사 수수료 336,000원 x 1식 ※부가가치세 10%별도					
	공공 요 금 및 제세(02)	공공 요금 및 제세	보험료, 우편료, 택배발송료, 퀵서비스 이용료 등					
	임차료 (07)	대관/임차	교육 공간 대관 / 장비, 소품 임차 등					
여비 (220)	일반 용역료 (14)	용역료	외부 업체 용역료					
	국내 여비 (01)	여비 기준	○ 출장경비 및 교통비 지급 기준 ☞ 선정기관의 기준에 준함 ※기준이 없을 경우 경기문화재단 기준에 따름					
업무	사업 추진비	강사 회의식비	강사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, 식대 등					
추진비 (240)	(01)	참여자 다과비	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					
인건비 (110)	일 용 임금 (04)	보조 인력	o 일용직(아르바이트) - 1일 행사 보조, 정산 보조 등 ☞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 적용					